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1. 개정 이유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도로관리청의 실태파악과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자료제출의 구체적인 기준을 신설하고, 타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점용 안전관리자료 등의 제출 기준 도입(안 제32조의2)

- 1) 도로법 일부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안 제32조의2 신설을 하게 됨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이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타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등(안 제30조, 제35조, 별표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 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도로점용 안전관리자료 등의 제출요구) ①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자료(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자료 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도로공사 준공확인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27조에 따라 주요지하매설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 등의 관리
현황(전자태그 정보를 포함한다)
2. 제32조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의 준공도면

3. 그 밖에 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료 등
2. 법 제61조에 따른 허가로 설치하는 진출입로 부대시설 등(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의 관리실태
3.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안전
시설, 안전표지 등의 관리실태
4. 그 밖에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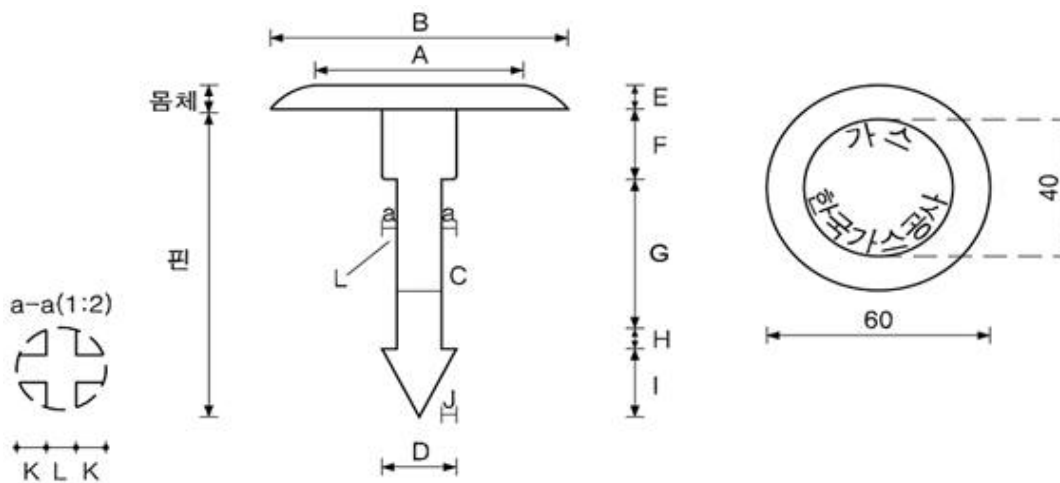
제35조제5호 중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을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로 한다.

별표 4 제2호다목1)나) 중 “20mm,”를 “25mm,”로 하고, 같은 1) 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규격: 몸체 60mm × 7mm, 핀 140mm × 25mm, F Ø20mm × 15mm

다) 크기 및 모양

<측면도>



(단위: mm)

A	B	C	D	E	F	G	H	I	J	K	L
40	60	15	25	7	15	100	5	20	5	5	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신청)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 은 자가 법 제62조제2항(법 제73 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 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 의 준공확인 신청서에 설계도면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이하 “지하시설물 도”라 한다)를 첨부하여 도로관리 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신청) ----- ----- ----- -----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 -----.
<u><신 설></u>	<u>제32조의2(도로점용 안전관리자료 등 의 제출요구) ①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자료(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 자료 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u> <u>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도 로공사 준공확인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u> <u>1. 제27조에 따라 주요지하매설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 등의 관리 현황(전자태그 정보를 포함한다)</u> <u>2. 제32조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의</u>

	<u>준공도면</u> 3. 그 밖에 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료 등 2. 법 제61조에 따른 허가로 설치하는 진출입로 부대시설 등(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의 관리실태 3.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안전시설, 안전표지 등의 관리실태 4. 그 밖에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35조(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 영 제7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 4. (생략) 5.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 6.·7. (생략)	제35조(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 ----- ----- ----- -----. 1. ~ 4. (현행과 같음) 5.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 ----- 6.·7. (현행과 같음)

□ 별표 4 제2호다목1)

나) 규격	
기존	나) 규격: 몸체 60mm × 7mm, 핀 140mm × <u>20mm</u> , F Ø20mm × 15mm
개정	나) 규격: 몸체 60mm × 7mm, 핀 140mm × <u>25mm</u> , F Ø20mm × 15mm

다) 크기 및 모양	
기존	<측면도>
개정	<측면도>

(단위: mm)

A	B	C	D	E	F	G	H	I	J	K	L
40	60	15	25	7	15	100	5	20	5	5	5